

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신정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서울시는 빗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,
빗공해 우려가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조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
빗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조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인공조명 설치가 불가피해 빗공해가 우려되는 공업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,
사용자의 안전과 야간 환경 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이 조명계획 수립에 배제되어 있는 등

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여

실효적인 빛공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.

-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목적에 공업활동을 추가하고, 조명계획 수립시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사오니,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